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519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7일
발 의 자 : 임준희 의원
찬 성 자 : 오진환, 이재식, 정택진, 신상균, 조진호, 공기환, 이인락, 최재란, 이수옥, 유영주, 임정옥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2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

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 3. 27.>
   나. 삭제 <2018. 3. 27.>
   다. 삭제 <2018. 3. 27.>
   라. 삭제 <2018. 3. 27.>
   마. 삭제 <2018. 3. 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